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본 예산안은 2011.09.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10일 제1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Ⅰ. 제안이유

○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법정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7,22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05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89백만원이 증액된 228,001백만원, 특별회계는 3,064백만원이 증액되어 69,219백만원임.

○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2,605백만원, 세외수입 887백만원, 재정보전금 25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24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28472백만원, 지방교부세 7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92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4,497백만원(예비비 1,773백만원 포함), 재무활동 52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126백만원, 재무활동 6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5백만원임.

Ⅲ. 검토내용

1. 총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297,220,117	100	289,167,073	8,053,044	2.78
일 반 회 계		228,001,120	77.1	223,011,979	4,989,141	2.24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33,667,865	11.5	33,424,865	243,000	0.73
	소 계	35,551,132	11.3	32,730,229	2,820,903	8.62
	주택사업	46,195	0.02	46,195	-	
	기반시설부담금	130,540	0.05	130,540	-	
	의료보호기금	676,531	0.21	601,803	75,448	12.55
	발전소주변지역	73,938	0.02	45,251	28,687	63.40
	수질개선	30,873,928	10.82	31,293,160	△419,232	△1.34
	공유재산관리	3,750,000	0.21	614,000	3,136,000	510.75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 총 297,220,11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8%인 8,053,044천원이 증액되었고,
- 이중 일반회계는 228,001,120천원으로 4,989,141천원(2.24%)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69,218,997천원으로 3,063,903천원(4.63%)이 증액되었음.
- 전체회계별 예산규모 면에서는 일반회계가 76.71%, 특별회계는 23.29%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228,001,120	100	223,011,979	4,989,141	2.24
자 체 수 입	소 계	36,800,380	16.1	33,308,222	3,492,158	10.04
	지 방 세	21,408,100	9.39	18,803,100	2,605,000	13.85
	세외수입	15,392,280	6.75	14,505,122	887,158	6.12
의 존 수 입	소 계	191,200,740	83.9	189,703,757	1,496,983	0.7
	지방교부세	125,525,420	55.05	125,525,420	-	
	재정보전금	5,980,000	2.62	5,728,000	252,000	4.40
	국도비보조금	59,695,320	26.18	58,450,337	1,244,983	2.13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28,001,12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인 4,989,141천원이 증가하였고,

- 자체수입은 36,800,380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지방세 2,605,000천원, 세외수입 587,15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의존수입은 191,200,740천원으로 재정보전금 5,98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59,695,32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를 세목별로 보면

① 지방세수입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21,408,100	100	18,803,100	2,605,000	13.85
보 통 세	20,908,100	97.9	18,423,100	2,485,000	13.4
목 적 세	-	-	-	-	-
과년도수입	500,000	2.1	380,000	120,000	31.5

○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2,410,000천원,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75,000천원, 지난년도수입 120,000천원이 증가 하였음.

② 세외수입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15,392,280	100	14,505,122	887,158	6.1
경상적 세외수입	소 계	6,510,871	42.2	6,278,871	232,000	3.6
	재산임대수입	598,175	3.8	598,175	-	-
	사용료수입	725,550	4.7	725,550	-	-
	수수료수입	1,164,000	7.5	1,012,000	152,000	1.5
	사업수입	2,216,293	14.3	2,216,293	-	-
	징수교부금수입	1,206,853	0.7	1,206,853	-	-
	이자수입	600,000	3.8	520,000	80,000	15.3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8,881,409	57.7	8,226,251	655,158	7.9
	임여금	8,226,251	53.4	8,226,251	-	-
	이월금	695,949	4.5	290,791	405,158	139
	예탁금및예수금	2,000,000	12.9	2,000,000	-	-
	부담금	881,160	5.7	881,160	-	-
	잡수입	721,300	4.6	721,300	-	-
	지난년도수입	400,000	2.5	150,000	250,000	166

③ 지방교부세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계	125,525,420	100	125,525,420	-	-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음.

④ 재정보전금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계	5,980,000	100	5,000,000	252,000	4.3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재정보전금의 총규모는 5,980,000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인 252,000천원이 증액되었음.

⑤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59,695,320	100	53,450,337	1,244,983	2.1
국고보조금	50,299,512	84.2	49,413,544	885,968	1.7
도비보조금	9,395,808	15.7	9,036,793	359,015	3.9

○ 보조금 59,695,320천원은 당초예산대비 2.1% 증액된 것으로

- 이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885,968천원이 증액된 50,299,512천원 이고,

-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359,015천원이 증액된 9,395,808천원임.

□ 세출예산

①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228,001,120	100	223,011,979	4,989,141	2.24
정책사업비	175,980,101	77.1	171,483,015	4,497,086	2.62
재무활동비	17,660,703	7.7	17,139,288	521,415	3.04
행정운영경비	34,360,316	15.0	34,389,676	△29,360	△0.09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4%인 4,989,141천원이 증가한 228,001,120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책사업비는 기정대비 2.62%인 4,497,086천원이 증액된 175,980,101천원이고,

- 재무활동비는 기정대비 3.04%인 521,415천원이 증액된 17,660,703천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기정대비 0.09%인 29,360천원이 감액된 34,360,316천원임.

② 기능별 구분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228,001,120	100	223,011,979	4,989,141	2.24
일반공공행정	14,105,738	6.19	13,582,771	522,967	3.85
공공질서및안전	15,194,064	6.669	13,759,344	1,434,720	10.43
교 육	1,645,197	0.72	1,645,197	-	-
문화및관광	30,670,056	13.45	30,629,736	40,320	0.13
환경보호	20,216,134	8.87	19,458,781	757,353	3.89
사회복지	29,115,480	12.77	28,206,152	909,328	3.22
보 건	3,445,155	1.51	3,280,963	164,192	5.0
농림해양수산	35,092,854	15.39	34,476,670	616,184	1.79
산업중소기업	6,553,356	2.87	6,309,455	243,901	3.87
수송및교통	17,224,574	7.55	17,001,056	223,518	1.47
국토및지역개발	18,604,651	8.16	17,772,178	832,473	4.68
예비비	1,773,545	0.78	2,500,000	△726,455	△29.06
기 타	34,360,316	15.07	34,389,676	△29,360	△0.09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대비 3.85%가 증액된 14,105,738천원이고,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기정대비 10.43%가 증액된 15,194,064천원이며,
- 교육분야는 변동없으며
- 문화관광분야는 0.13%가 증액된 30,670,056천원이고,
- 환경보호분야는 기정대비 3.89%가 증액된 20,216,134천원이며,
- 사회복지분야는 기정대비 3.22%가 증액된 29,115,480천원임.
-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5.0% 증액된 3,445,155천원이며,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대비 1.79%가 증액된 35,092,854천원이고,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정대비 3.87%가 증액된 6,553,356천원임.
- 수송및교통분야는 기정대비 1.47%가 증액된 17,224,574천원이며,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기정대비 4.68%가 증액된 18,604,651천원이고,
- 예비비는 기정대비 29.06% 감액된 1,773,545천원이며,
- 기타 각 부서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당초대비 0.09%가 감액된 34,360,316천원이 편성되었음.

③ 성질별 구분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228,001,120	100	223,011,979	4,989,141	2.24
인 건 비	31,365,741	13.76	31,372,622	△6,881	△0.02
물 건 비	20,128,257	8.83	19,518,544	609,713	3.12
경상이전	59,909,050	26.28	59,217,609	691,441	1.17
자본지출	105,163,411	46.12	101,108,003	4,055,408	4.01
보전재원	1,500,000	0.66	1,500,000	-	-
내부거래	6,068,306	2.66	6,107,549	△39,243	△0.64
예비비및기타	3,866,355	1.70	4,187,652	△321,297	△7.67

○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기정대비 0.02% 감액된 31,365,741천원이고,
- 물건비는 기정대비 3.12% 증액된 20,128,257천원이며,
- 경상이전비는 59,909,050천원으로 기정대비 1.17% 증액되었음.
- 자본지출은 기정대비 4.01% 증액된 105,163,411천원이고,
- 보전재원은 변동없으며,
- 내부거래분야는 39,24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대비 7.67% 감액된 3,866,355천원임.

3.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69,218,997	100	66,155,094	3,063,903	4.63
상수도공기업		33,667,865	48.6	33,424,865	243,000	0.73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35,551,132	51.3	32,730,229	2,820,903	8.625
	주택사업	46,195	0.06	46,195	-	-
	기반시설부담금	130,540	0.19	130,540	-	-
	의료보호기금	676,531	0.90	601,083	75,448	12.55
	발전소주변지역	73,938	0.1	45,251	28,687	63.40
	수질개선	30,873,928	44.6	31,293,160	△419,232	△1.34
	공유재산관리	3,750,000	5.4	614,000	3,136,000	510.75

□ 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9,218,997천원으로 기정대비 4.63%인 3,063,903천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73%인 243,000천원이 증액된 33,667,865천원이고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대비 75,448천원이 증액된 676,531천원이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8,687천원이 증액된 73,938천원이고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19,232천원이 감액된 30,873,928천원이고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136,000천원이 증액된 3,750,000천원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변동없음.

□ 세출예산

○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마찬가지로 당초대비 4.63%인 3,063,903천원이 증액된 69,218,997천원으로 회계별로 주요세출을 살펴보면,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 미탄장수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 142,000천원
  - 진부상수원 오염방지 휀스설치 72,000천원이며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진료비 예탁금 27,496천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3,000천원
  - 하수처리시설 설치 △363,00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 군유지집단화사업 3,416,000천원
  - 햄프산업기반구축 부지매입 △330,000천원 임.

4. 종합검토의견

○ 2011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97,22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89,167백만원보다 8,053백만원(2.7%)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228,00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89백만원(1.2%)
- 특별회계는 69,21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4백만원(4.6%)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 기정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605백만원이 증액된 21,408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87백만원이 증액된 15,392백만원, 재정보전금은 252백만원이 증액된 5,980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245 백만원이 증액된 59,695백만원임.
- 지방세는 알펜시아의 토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입 증가로 2,410백만원이 반영되었으며
- 세외수입은 수렵장운영 계획에 따른 수수료와 국·도비사용 잔액이 반영되었음.
-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 사회복지사업 354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25백만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100백만원, 논 소득기반사업 223백만원 등 1,49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문화 및 관광(40백만원, △0.1%), 농림수산(616백만원, 1.8%), 사회복지(909백만원, 3.2%), 일반행정(523백만원, 3.8%), 환경보호(757백만원, 3.9%)분야 등은 감소 또는 3%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 공공질서 및 안전(1,434백만원, 10.4%), 보건(164백만원, 5%), 국토 및 지역개발(832백만원, 4.7%)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음.

-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 문화체육과(△4백만원, △0.02%), 자치행정과(81백만원, 0.23%), 관광경제과(197백만원, 2%), 산림과(170백만원, 1.5%) 농업기술센터(647백만원, 2.6%) 등은 감소 또는 3%내의 소폭 증가한 반면

  · 환경과(601백만원, 5.7%), 건설방재과(2,143백만원, 5.5%), 도시과(247백만원, 6.3%) 등은 5%이상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 7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155백만원보다 3,064백만원(4.6%) 증액된 69,219백만원임.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미탄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42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진부상수원 오염방지 휀스설치 72백만원 등임.

-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2,323백만원), 군유 일반재산 매각수입(800백만원) 등을 증액하여 군유지 집단화사업 3,41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사업 및 하수관거 신설(정비)사업의 한강수계기금 조정에 따라 사업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음.

○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중 군이 직접 시행하는 자체사업을 보면

- 평가체계구축용역 60백만원, 동계올림픽 연계 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200백만원, 용평면 체육시설정비 100백만원, 음폐수 전처리시설 설치 500백만원, 2020년 군기본계획 2015년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300백만원, 우수한약유통시설보완 200백만원 등임.

○ 특히 신규 연구용역사업은 3건에 560백만원으로

- 학술용역사업비는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제출되고는 있으나, 그 필요성과 용역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기획감사실	평가체계 구축 용역	60,000	
기획감사실	동계올림픽연계 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200,000	
도 시 과	‘20년 군기본계획 및 ’15년 군 관리계획변경	300,000	

○ 사업 중에 수년(5년 이내)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의 변경 건은

- 총 22개 사업중 16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경으로 연부액 사업비의 조정 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평창·대화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공사는 연차별 국·도비 확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대화~개수간(군도 4호선) 터널설치공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건은

- 총사업비 12,104백만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당초 2012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도로 조기개통에 따른 주민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전공사를 추진해 전체 공사는 완료된 상황으로

- 선시공분 예산 미확보로 준공이 불가능하여 미계약분 300백만원에 대하여 2012년 상환 계획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음.

○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성립전 예산은 국고보조 2건, 기금 2건, 도비 6건 등 10건에 188백만원임.

-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상 문제점은 없음.

○ 이처럼 금회 추경예산은 재산세 징수분과 신규·변경 내시된 중앙재원 및 예비비, 예산집행 잔액 등의 재원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경예산때 마다 세출예산 과목경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격에 맞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불일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을 적절히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전재정 확보 이후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업목적 달성 후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환하고는 있으나 사업추진을 미루었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해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함.